

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 폐지조례(안) 심사 보고서

1999. 7. 3
시민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9. 6. 29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'99. 6. 29.
- 다. 상정일자 : 제6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'99. 7. 3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조한영 산업위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시 세부적인 기준과 기본방향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가 농지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동법시행령에서 위 사항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마포구 농지전용업무 추진상의 원칙과 허용면적 그리고 농지전용의 심사기준 등 농지전용업무 처리의 기본방향과 세부적인 기준 등이 우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, 농지법시행령(1999. 5. 24 대통령령 제16348호)이 제정되면서 위 사항이 동법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, 불필요하게 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- 질의요지(이종일 위원) : 폐지조례안중 폐지근거에서 '98.9. 16일자는 무엇인지?
- 답변요지(조한영 산업위생과장) : 농지법이 최종적으로 개정된 날짜임.
- 질의요지(김유현 위원) : 본 건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는 것 같은데 완화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에 혜택이 있는지?
- 답변요지(조한영 산업위생과장) : 상위법에서 제정되어 있어서 본 심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업무내용이나 처리절차 업무량 이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내용이 완화된 것은 없음.
- 질의요지(한대운 위원) : 구조례는 언제 제정되었는지?
- 답변요지(조한영 산업위생과장) : '91.2.5일자로 제정되었음.
- 질의요지(한대운 위원) : 폐지조례라도 관련법규중 해당법조문 을 참고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?
- 답변요지(조한영 산업위생과장) : 앞으로 그렇게 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

제출일자 : 1999. 6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이유

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시 세부적인 기준과 기본방향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가 농지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동법시행령에서 위 사항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함.

3. 폐지근거

농지법(1999·9·16 법률 제5555호)

농지법시행령 (1997·9·11. 대통령령 제15480호)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첨부 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